

#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23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 14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제안이유

- 『지방재정법』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·운용 중인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.12.31.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인 특별회계의 운영·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6.12.31.까지 3년 연장

## 주요내용

- 「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(존속기한)  
: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→ (개정) 2026년 12월 31일

## 일부개정 조례안 : 【붙임 1】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##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3】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##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 : 2023. 6. 30. ~ 2023. 7. 20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[붙임 1]

##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 을 “2026년 12월 31일” 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해양수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해양수산과장 김 충 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수산진흥팀장 전 형 훈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지 수 (행정 2328)

【붙임 2】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(존속기한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까지</u> 로 한다.	제5조(존속기한) ----- <u>2026년 12월 31일</u> -----